

# 서울특별시 마포 마을활력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8
----------	------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최근 이웃 간 소통과 공동체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주민 참여욕구가 증대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두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장려하고 있으나,
- 나. 마을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및 소통 욕구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조성한 공간의 경우, 임대계약 만료 및 임대료 상승 등의 이유로 공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다. 특히 마포지역은 지역주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화합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의 여파로 공동체공간 및 주민 소통공간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
- 라.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마을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주민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까지 마을활력소가 조성되지 않은 마포구에 마을활력소를 조성한 후, 공간 운영은 운영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거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 마포 마을활력소
- 시설규모 : 지상 2층(연면적 250.78㎡)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3길 2(성산동 205-23)



〈위 치 도〉

〈사 진〉

- 공간구성(안) : 마을카페, 공유부엌, 다목적 프로그램실 등
- 개소일자 : 2017. 11월(예정)
- 이용대상 : 지역 주민 및 지역 내 단체 등
- 주요내용 : 주민소통을 위한 마을사랑방 및 마을 내 문화공간 운영, 지역 청년 및 중·장년층의 교류공간 운영 등

### 나. 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위탁업무 : 마포 마을활력소 시설 관리 · 운영 일체
  -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마을주민의 참여확대 및 소통을 위한 나눔터 및 사랑방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소요예산 : 연간 80백만원 (2018년 예산편성 추진)
  - '18년도부터 회계 · 건물관리 · 홍보에 필요한 인건비 등 최소예산 편성
    - ※ 마을활력소 공간 관리비 · 운영비 등 기본경비(제세공과금)는 원칙적으로 자체조달

####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마을공동체 소통공간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유지·발전시키며 협력과 상생을 통한 공동체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형 운영보다는 지역상황에 능통한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며
- 또한, 주민 참여를 제고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마을자원과 연계가 활발한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27조(마을공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배움터”는 마을배움과 돌봄, 주체적 성장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환경에 따라 특화된 마을배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2. 마을배움 운영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배움 사업 발굴 시행
  3. 주민과 청년의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배움 활동가 양성
  4. 마을학교의 거점 공간 운영
  5. 그 밖에 마을배움 활성화와 주민 활동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지역공동체담당관 공동체공간구성팀 김승희 (☎ 2133-6344 )